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김유현 소유물건(2025타경50884)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현정

감정평가서번호: 250827-13-31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황혜원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이명주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삼억칠천사십만구천구십원정(₩370,409,09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현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유현 (2025타경5088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9.08	2025.09.08	2025.09.09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000	토지	1,000	-	133,000,000
	건물	521.39	건물	521.39	-	226,759,090
	제시외건물	(89.6)	제시외건물	89.6	-	10,650,000
합계					₩370,409,09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명주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대상물건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장평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서, '춘천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 대상물건

#### 가.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개별지가 (원/㎡)	비고
2	장평리 918	1,000	계획관리	대	상업용	세로(가)	사다리 환경사	122,200	-

#### 나. 건물

기호	내 용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91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사용승인일
	근린생활시설	521.39	30.78	52.14	지상2층	2002.02.02.

#### 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후첨 "위치도" 및 "사진용지" 참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기준시점 결정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9월 08일로 함.

##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5년 09월 08일에 실시하였으며, 귀 제시목록 및 관련공부에 의거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5.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6.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 7. 그 밖의 사항

-본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해당 면적 등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하였음.

-별첨 “사진”과 같이 본건 건물에 부합된 계단 등은 건물의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 1.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성격,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기준시점 현재의 제조달원가에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가수정은 현상, 관리상태, 장애이용가능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당해 물건의 특성에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① 건물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임대사례의 포착이 곤란하여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함.
  - ② 토지의 비교방식에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이 본건 토지의 시장가치 산정에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판단됨.
  - ③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상기 판단 근거에 따라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고, 건물은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를 제외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가. 공시지가기준법

#### 1) 비교표준지 선정

본건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호(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군업리 278-1	876	계획관리	대	단독 주택	세로(가)	부정형 평 지	61,700	-

#### 2) 위치도

후첨 “광역위치도” 및 “상세위치도” 참조.

####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획관리지역 : 2025.01.01 ~ 2025.09.08.]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07.31.	0.480	2025년 05월까지 누계분
2025.07.01. ~ 2025.07.31.	0.052	2025년 05월분
누 계 (2025.01.01 ~ 2025.09.08.)	0.546 (1.00546)	$(1 + 0.00480) * (1 + 0.00052 * 39/31)$ ≒ 1.00546

※ 2025년 08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되어 2025년 07월분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5) 개별요인 비교

### 5.1)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상업지대)

조 건	항 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자연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5.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2	1.00	0.96	1.00	1.00	0.98	1.00	0.941
본건은 비교표준지(가) 대비 접근조건(접근성 등),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그 밖의 요인 보정

### 6.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시세, 가격 동향 및 감정평가사례 등과의 균형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근의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감정평가사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 6.2) 산정방법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과 사례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는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3) 가격조사 자료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①	군업리 000-0	계획관리	원	유원지	160,000	2025.04.15.	법원경매
②	군업리 0000	계획관리	대	상업용	127,000	2022.12.27.	법원경매
③	장평리 000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132,000	2020.11.30.	법원경매
④	군업리 000-0 외	계획관리	대 및 도로	주거나지 및 도로	148,997	2023.12.05.	토지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6.4.1) 적용 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①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 6.4.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사례	160,000	1.000	1.00272	1.000	0.882	141,504	2.281
(가)표준지	61,700	-	1.00546	-	-	62,037	
※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5.04.15.~2025.09.08.) : 1.00272							
※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접근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환경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인근환경 등에서 열세함					0.90
	획지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행정적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기타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수목 등에서 열세함.					0.98
	계	-					0.882

### 6.4.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결정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상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2.28

##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2	61,700	1.00546	1.000	0.941	2.28	133,099	133,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거래사례비교법

### 1) 거래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 및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들 중에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④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①	군업리 000-0	계획관리	원	유원지	160,000	2025.04.15.	법원경매
②	군업리 0000	계획관리	대	상업용	127,000	2022.12.27.	법원경매
③	장평리 000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132,000	2020.11.30.	법원경매
④	군업리 000-0 외	계획관리	대 및 도로	주거나지 및 도로	148,997	2023.12.05.	토지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 2) 사정보정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며 별도의 사정보정은 요하지 않음.(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획관리지역 : 2023.12.05. ~ 2025.09.08.]

적용사례	시점수정기간	시점수정치	비고
④	2023.12.05.~2025.09.08.	1.647 (1.016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3.12.05~25.09.08 ) (계획관리)  2023.12.01 ~ 2023.12.31 : 0.022 2024.01.01 ~ 2024.12.31 : 1.076 2025.01.01 ~ 2025.07.31 : 0.480 2025.07.01 ~ 2025.07.31 : 0.052  $( 1 + 0.00022 * 27/31 ) * ( 1 + 0.01076 ) * ( 1 + 0.00480 ) * ( 1 + 0.00052 * 39/31 )$ ≒ 1.01647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개별요인 비교

### 5.1)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택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상업지대)

조 건	항 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자연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5.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2	1.00	1.00	0.90	1.00	0.98	1.00	0.882
본건은 거래사례④대비 환경조건(인근환경 등),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정도 등)에서 열세함.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2	148,997	1.000	1.01647	1.000	0.882	133,580	134,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토지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단가와 비교할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대상 토지의 단가를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2	133,000	134,000	133,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 가. 재조달원가

#### 1) 표준단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03-01-05-09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196,000	50 (45~55)
03-01-02-03	점포 및 상가	벽돌조/목조지붕틀/대골슬레이트	4	1,176,000	45 (40~50)

※ 자료출처 : 2024년도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 한국부동산연구원

#### 2) 재조달원가의 결정

본건 건물의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마감재 수준, 관리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한 신축단가에 부대설비 등에 따른 보정단가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층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	비고
1	1층	근린생활시설	1,300,000	-
	2층	근린생활시설	1,000,000	-

### 나. 건물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하되,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기호	층	재조달원가 (원/㎡)	내용연수	유효 경과연수	잔존연수	건물단가 (원/㎡)
1	1층	1,300,000	50	33	17	442,000
	2층	1,000,000	40	23	17	425,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면적 (㎡)	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2	1,000	133,000	133,000,000	-
	소계	<b>1,000</b>	-	<b>133,000,000</b>	-
건물	1	304.02	442,000	134,376,840	-
		217.37	425,000	92,382,250	-
	소계	<b>521.39</b>	-	<b>226,759,090</b>	-
<b>합계</b>		-	-	<b>359,759,090</b>	-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하 여 백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골말길 74-8	918 위 지상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및철골조 및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2층	304.02	304.02	442,000	134,376,840	관찰감가 1,300,000 x 17/50  1,000,000 x 17/40
					217.37	217.37	425,000	92,382,250	
2	동 소	918	대	계획관리지역	1,000	1,000	133,000	133,000,000	
<b>소 계</b>								<b>₩359,759,090</b>	
<제시외 건물>									
㉠	동 소	918 위 지상	현관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6.5)	6.5	-	550,000	
㉡	동 소	918 위 지상	창고 등	판넬조 판넬지붕	(73.1)	73.1	-	9,000,000	
㉢	동 소	918 위 지상	물탱크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0.0)	10.0	-	1,100,000	
<b>소 계</b>								<b>₩10,650,000</b>	
<b>합 계</b>								<b>₩370,409,090.-</b>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소재 ‘장평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041),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젓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골말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2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붙임,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2)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으나, 기준시점 현황 미운영 상태임.

##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5)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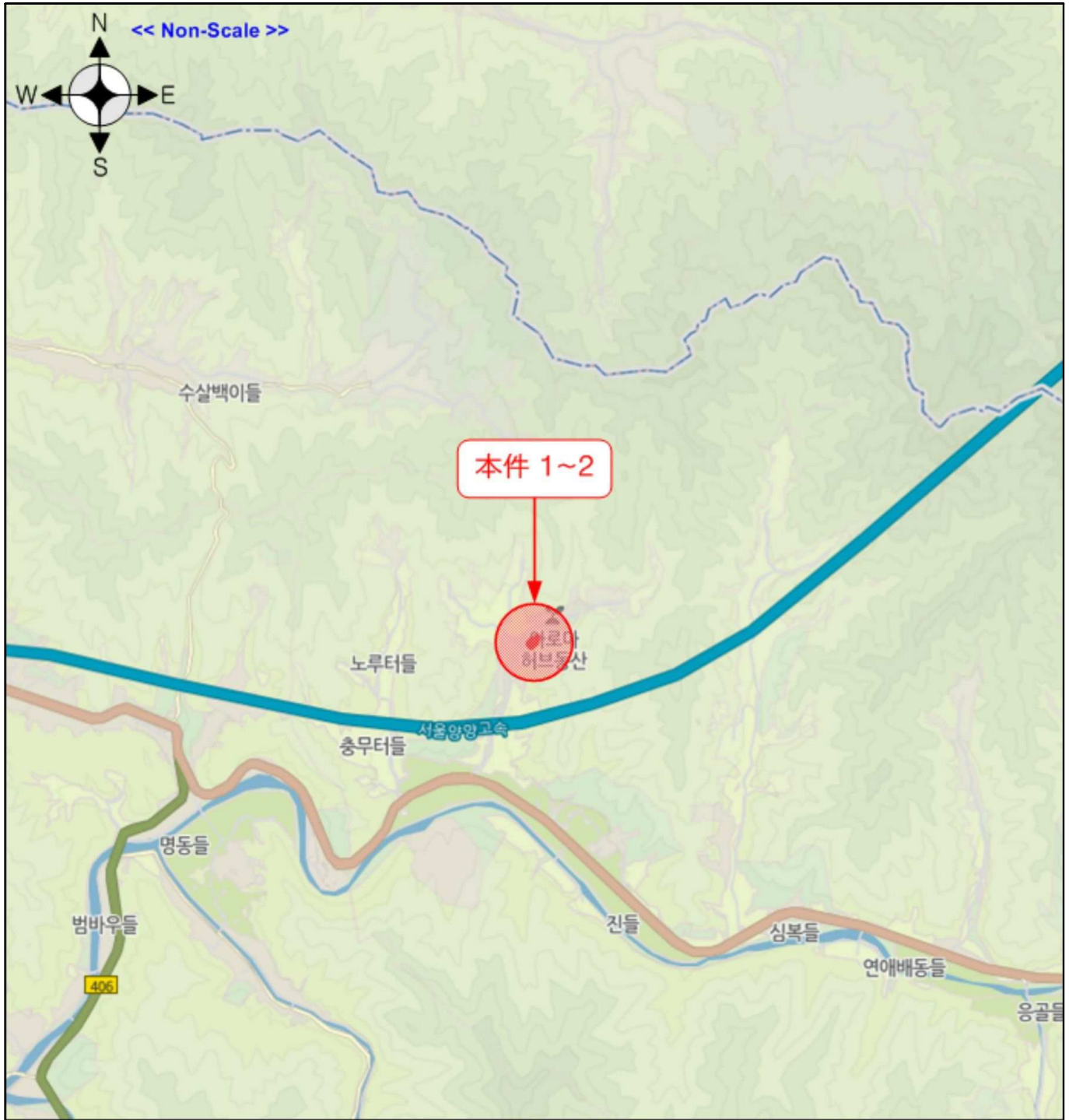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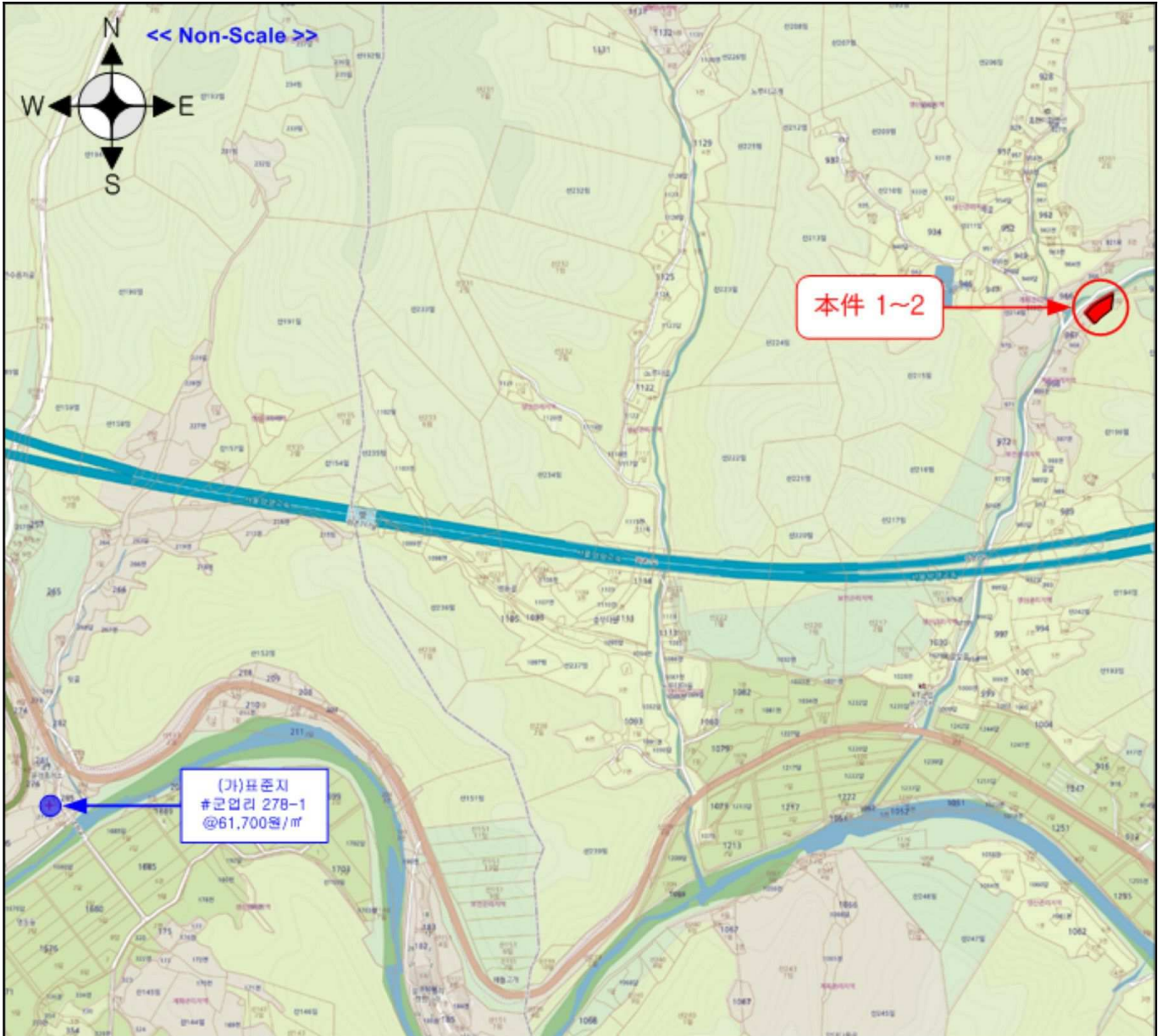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918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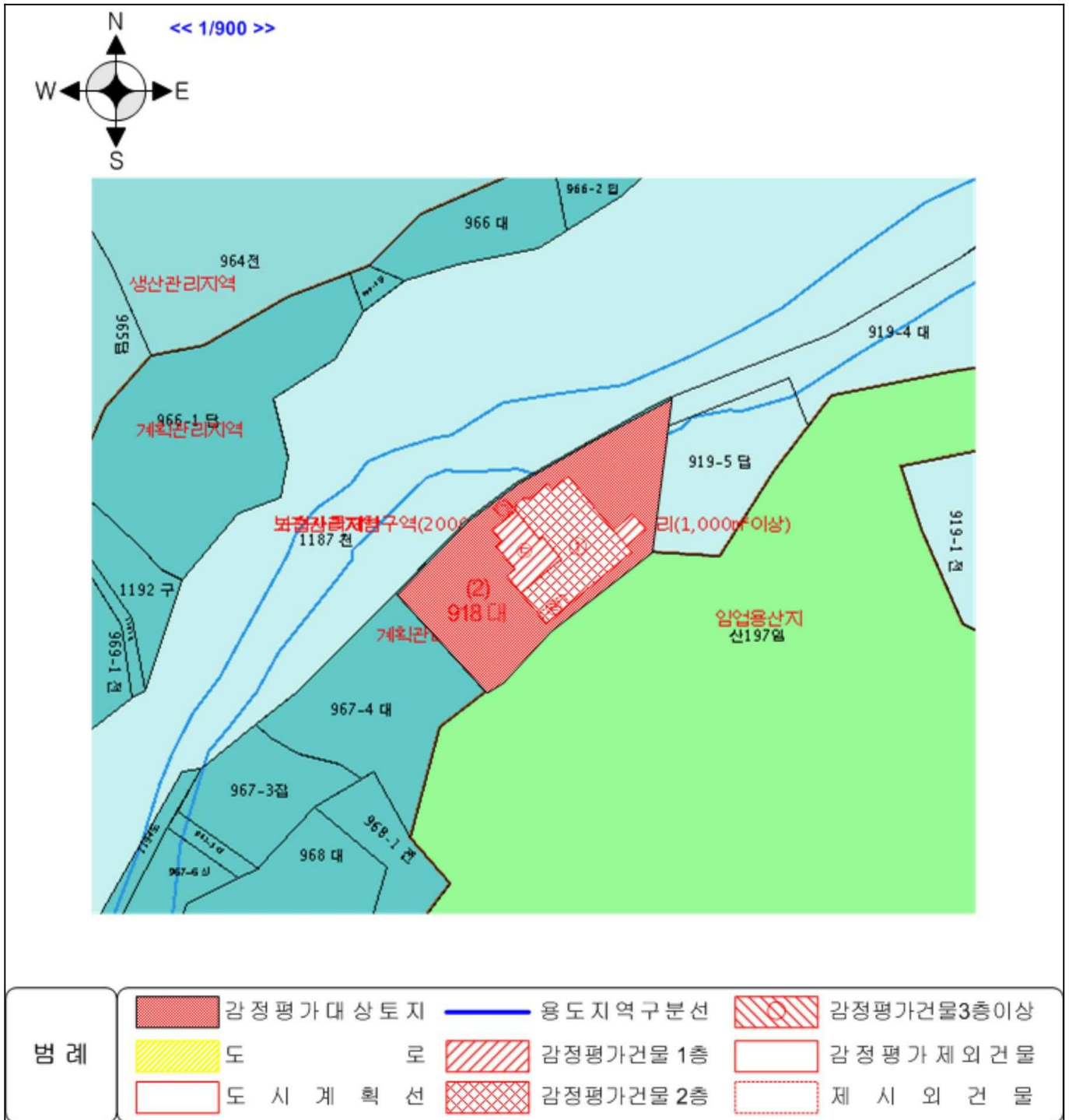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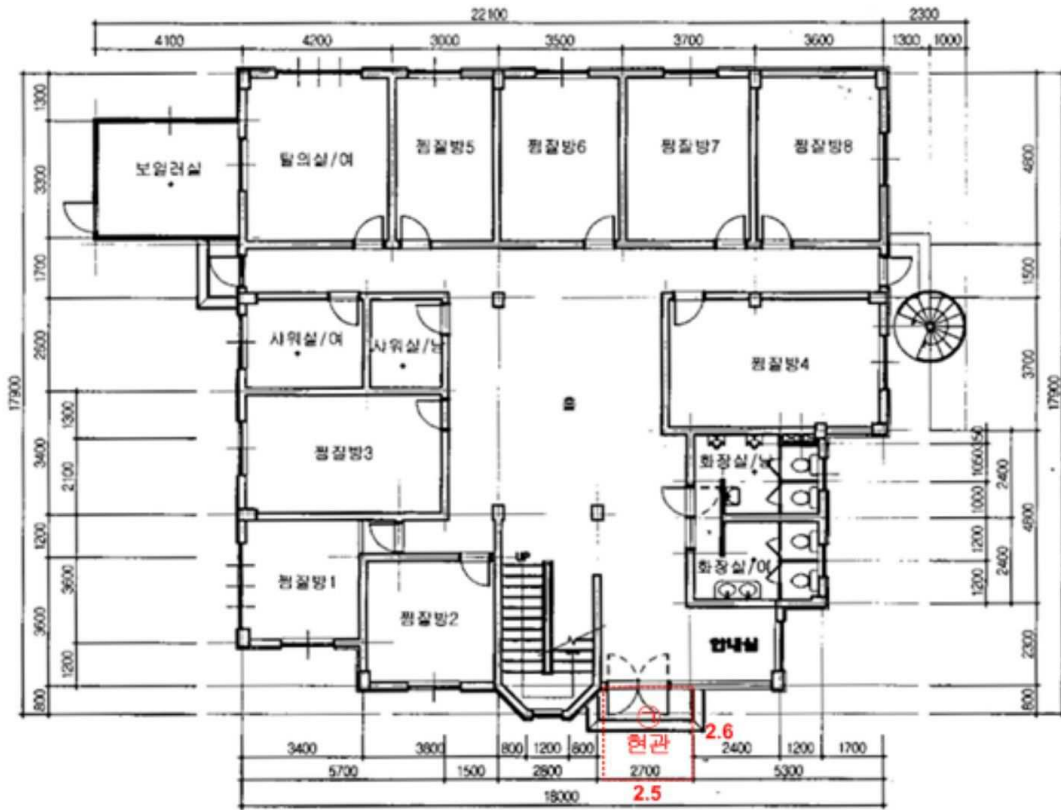
명 레	본 건	표 준 지	거 래 사 례	담 보	경 매
	일 반 거 래	보 상	자 산 재 평 가	공 매	취 득 처 분

# 지 적 도



#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 Non-Scale >>



① [1층]

[감정평가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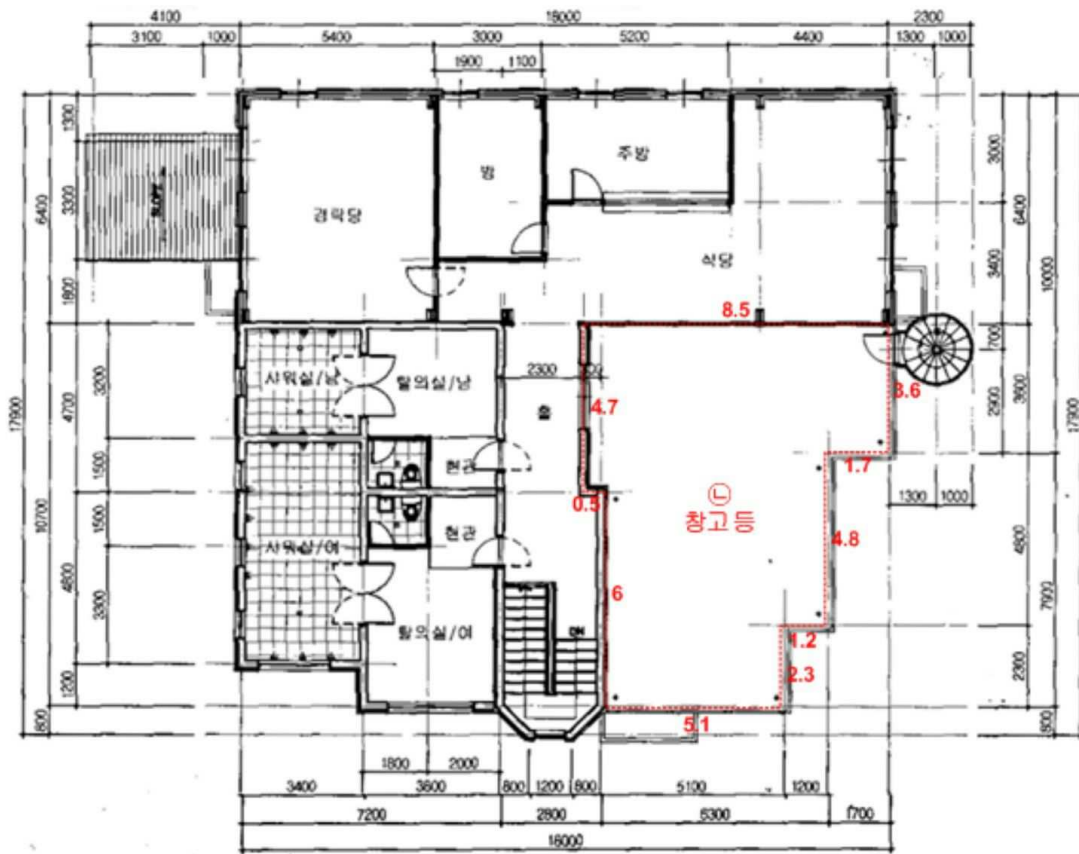
① 1층 304.02㎡

[제시외건물및종·부합물]

① 철골조 아스팔트씽글지붕, 현관, 1층 : 약 6.5㎡

#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 Non-Scale >>



① [2층]

[감정평가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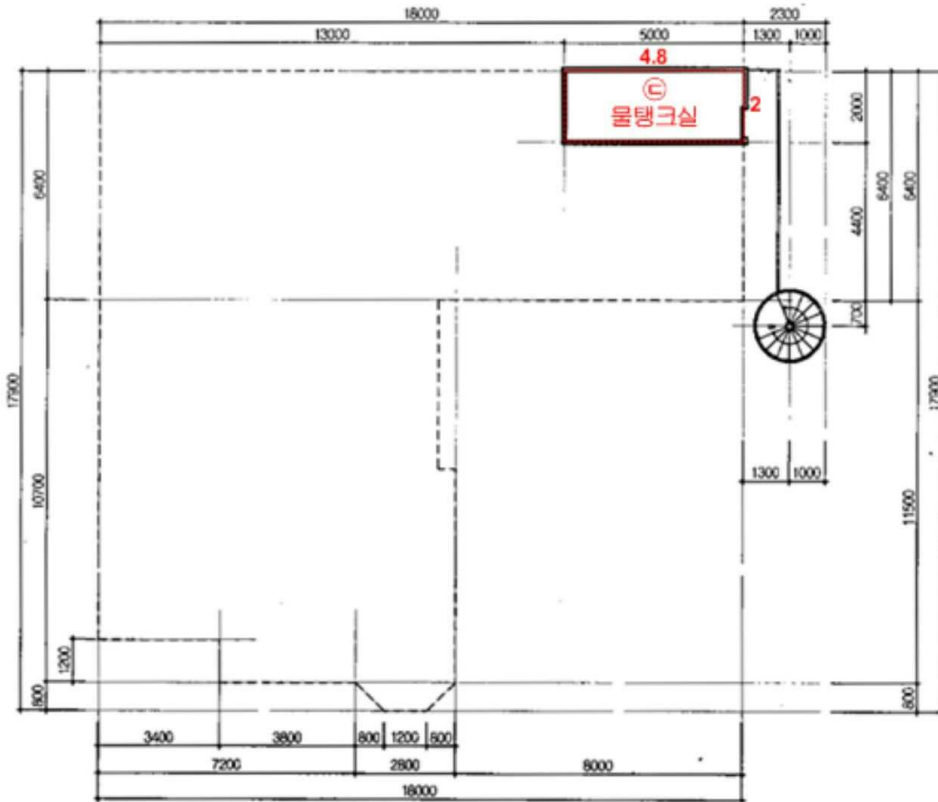
① 2층 217.37㎡

[제시외건물및종·부합물]

ⓐ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등, 2층 : 약 73.12㎡

#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 Non-Scale >>



① [옥탑층]

**[ 제시 외 건물 및 종·부합물 ]**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물탱크실, 옥탑층 : 약 10㎡



2



1

